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0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2.18.)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4.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위성곤의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을 포함하여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단하겠다고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내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계엄을 통한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제외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고, 계엄 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며,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